



○ 중량물취급 안전(건축부)

- 개비온 인양중 와이어로프 파단에 의한 낙하 재해 예방을 위하여, 인양고리로 사용중인 와이어로프가 안전계수(화물 5)를 감안하여 안전하중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지를 검토 후 시행하기 바람.

※ 건설안전기본지침 P-22
(양중작업의 낙하방지 안전시설 및 작업기준)



○ 전도재해 예방(건축부)

- 현장에 적치된 도로포장용 자재 중 경사지에 적치되어 기울어져 있는 자재는 편평한 곳으로 이동적치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○ 사면 안전(건축부)

- 본관동 후면의 절토로 인하여 노출된 사면은 풍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대책 강구 요망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(붕괴, 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)



○ 건설기계 안전(건축부)

- 포장공사구간은 근로자와 장비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 장비에 근로자들이 부딪칠 위험이 있으므로 신호수를 배치하여 관리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0조(접촉방지)



○ 건설기계 안전(건축부)

- 경사지에 설치된 고소작업대 아웃트리거는 지면을 편평하게 고른 후 수평으로 지지될수 있도록 조치하고, 최대한 인출될 수 있도록 관리바람

※ 건설안전 기본지침 공통-37(고소작업대(차량 탑재형))

